

서 면 질 문

양재오의원

- 질 문 : 국유지 대부자 중 관내거주자 이외의 타지역인에게 대부하여 준 이유
- 답 변 : • 국유재산은 국가소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3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며,
- 잡종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제출, 동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시장과의 대부계약을 해야하며
 -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70%가 국가수입 30%가 시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 수익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을뿐, 대부 대상자의 요건을 규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외자라 하여 대부를 제한할 수 없음.

중동 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 경계조정 계획(안)

의안
번호

117

- 배 경
- 수도권 정비 계획 및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 17만을 상회하는 중동 신도시 건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신도시 지역 주민 입주가 금년 12월부터 시작되므로 주민등록 전입등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비하여 법정동 경계 조정이 불가피함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법정동 경계 조정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로 내부위임)
- 경계 획정 수단
- 계획중인 행정동 경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되는 도로와 택지 브락을 경계로 획정 하였음.
- 주요 경계 획정 내용
- 삼정동 : 열병합 발전소 부지로 그대로 존치
 - 약대동 : 운동 시설 지구로 주민 입주 계획이 없어 중동에 일부 편입하고 그대로 존치